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17 선고 2017가단10334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7. 20.

판결 선고2018. 8. 17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A은 248,482,968원 및 그 중 168,994,036원에 대하여, 피고들은 연대하여 138,494,555원 및 그 중 92,473,270원에 대하여 각 2016. 1. 1.부터 2018. 3. 31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,

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, 피고 A은 248,482,968원 및 그 중 168,994,036원에 대하여, 피고들은 연대하여 138,494,555원 및 그 중 92,473,270원에 대하여 각 2016. 1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8. 3. 31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항해민

별지